

4주차

일본군 ‘위안부’ -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 (1940년대)

김 지 민

학습목차

01.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등장

- '위안부' 용어 문제
- '위안소' 설치의 논리
- '위안부' 제도의 특수성

04. '위안소' 운영과 생활

- '위안소' 운영
-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 인권 유린의 범죄

학습목표

02. 여성들의 동원 과정

- 강제 동원의 근간이 마련되다
- 끌려간 여성들

05. 전쟁 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

- 생존과 귀환
- 후유증

학습내용

03. 그녀들의 이야기

- 피해자들의 증언
- 공통된 피해

2차시

여성들의 동원 과정

학습목차

학습목표

-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의미와 책임 소재를 설명할 수 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책임이 왜 일본 당국에 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강제 동원의 근간이 마련되다
- 끌려간 여성들

강제동원의 근간이 마련되다

이번 차시에는...

- 수많은 군 '위안소'를 채울 여성들을 어디에서 데려왔는가?
- 여성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동원되었는가?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위안부’ 피해자

- 약 20만명 (혹은 그 이상) 으로 추산
- 출신국: 일본, 식민지 조선,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네덜란드, 동티모르 등 (약 10개국)
- **피해자의 절반~80퍼센트 가량이 조선 여성**

‘위안소’ 설치 초반에는...

- 일본의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지원자 모집
- 곧 인력 부족으로 일본 당국은 식민지와 점령지에 눈을 돌림
- 종종 일본인 혹은 현지 민간업자들이 여성들을 알선, 고용

‘위안부’ 부정론자들의 논리

- ‘일본군이 여성들을 줄로 묶어 끌고가는 식의 직접적인 무력 사용이 없었으므로 강제 동원은 없었다’
- ‘불법적인 모집은 민간업자들의 잘못이며 일본 당국의 잘못은 아니다’
- ‘강제 동원’의 의미와 주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 역사적 사실과 거짓을 섞은 과장과 왜곡

‘위안부’ 부정론자들의 논리

- 계속된 전쟁으로 식민지 인력을 강제 동원하기 용이한 환경 조성
- 국제법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식민지’라는 조건
- 정부, 총독부, 경찰, 군 등이 협력해 폭력과 기만으로 여성들을 모집
→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 지나사변지(地)에서 위안소 설치를 위해 내지에서 종업부 등을 모집할 때 고의로 군부 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또 일반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종군기자·위문자 등을 개입시켜 통제를 받지 않고 모집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한 자, 혹은 모집을 담당하는 자의 인선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모집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경찰 당국에 검거 취조를 받은 자가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한 자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장래 이들 모집 등은 파견군에서 통제하여 이것을 담당할 인물의 선정을 주도적절하게 하고, 그 실시는

관계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군의 위신을 지키면서 사회문제상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기를 명(命)에 의해 통첩한다

“

육지밀 (陸支密) 제745호 1938년(쇼와13) 3월 4일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육군성 병무과 기안 1938.3.4.)

‘강제동원’의 의미를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

- 표면적으로는 불법적인 여성 동원 제재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일본군이 직접 동원에 책임지겠다는 점을 밝힌 문서
- 1990년대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일본군 내부 문서 발견, 발표
- 일본 정부가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됨

- “
5. 추업(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의 도항을 위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가업 계약, 기타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부녀 매매 또는 약취 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
 6. 추업을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 기타 일반 풍속과 관련된 영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를 모집 주선할 때에는 군의 양해 또는 군과 연락하는 듯한 언사 또는 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언사를 하는 자는 전부 엄중히 단속할 것
 7. 전호(前號)의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를 모집 주선할 때 광고 선전을 하거나 또는 사실을 허위 혹은 과대하게 전하는 것 등은 전부 엄중히 단속할 것 또 그 모집 주선 등에 종사하는 자는 엄중히 조사하여 정식 허가 또는 재외공관 등이 발행한 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신분이 확실치 않은 자는 인정하지 말 것

부녀의 도항은 현지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 당국에서도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중략)

1. 추업을 목적으로 한 부녀의 도항은 현재 내지에서 창기, 기타 사실상
추업을 하고 있는 만 21세 이상 또는 성병이나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로서
복지, 중지 방면으로 가는 자에 한하여
당분간 이를 묵인하기로 하고..“ (후략) “

내무성 통첩 제77호 (1938)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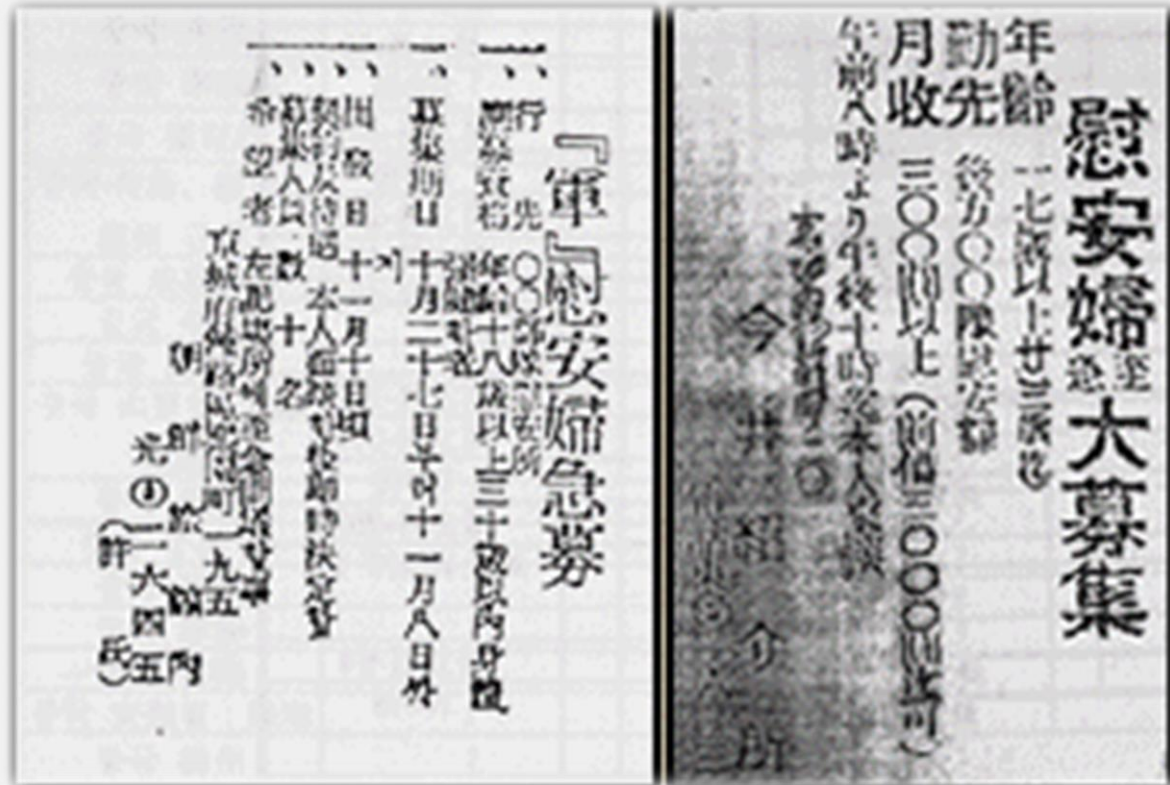
‘강제동원’의 의미를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

- 성매매를 목적으로 중국 화북, 화중으로 가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예외조항
- 21세 이상 여성만 여행을 허가하는 규정은 일본 내지에 한정
- 식민지 여성들을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여건

끌려간 여성들

여성들을 동원한 방법

- 1 취업 사기
- 2 물리적, 정신적 압박으로 협박
- 3 단순 납치 및 유괴



왼쪽: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44. 10. 27일자
오른쪽: 경성일보 1944. 7. 26일자에 실린 '위안부' 모집 광고

신문 광고가 여성들의 자발적 취업의 증거?

- 모집 광고가 실린 신문은 총독부 기관지
-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광고주는 군이 선정한 모집업자,
광고 대상은 각 지역 하청업자였을 것으로 추정

신문 광고가 여성들의 자발적 취업의 증거?

- 거짓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인신매매 수법
- 오히려 이는 일본군이 피해자들을 기만해서
동원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

“ 중국 광둥성 친현[欽縣]에서 남지나파견군 시오다[鹽田]부대의 하야시[林]부대 전용 군 위안소를 경영하고 있는 위안소 업자가 군을 따라 현재 광시성 난닝[南寧] 부근에서 취업 중인데 작부 연행의 목적으로 6월 30일 현지를 출발하여 타이완에 들어옴

위 업자는 별첨과 같은 군증명서를 휴대
위 업자는 작부 6명을 모집한 뒤 중국으로 재도항을 위하여
가오슝주에 본인과 작부 6명의 도항증명서를 신청함

중국 도항에 관해서는 1940년 5월 13일자 外第112號에 따라
현지 영사관 경찰서가 발급하는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가 필요하도록 되었으나
본 건 영업자는 영사관 경찰서와 먼 지역에 있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
그러나 도항자의 신원, 목적 등이 확실하니 본 건처럼
특종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헌병대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도항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처리라고 생각되니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940년 9월 2일자 타이완총독부 외사과장이 외무성 아메리카국
제3과장에게 보내는 문서 (外一第1162號-1, 1940.9.2)의 갑호 첨부문서

신문 광고가 여성들의 자발적 취업의 증거?

- '위안소' 운영업자가 여성들을 모집해서 대만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항증명서를 신청했다는 내용
- 영사관과 먼 지역이니 특별히 여행증명서 발급을 허가해달라는
대만 총독부 외사과의 요청

“ 이 전쟁포로와 그의 처, 처제는 (...) 조선에서 버마로 ‘위안부(comfort girls)’
를 데려 갈 수 있게 하는 허가서를 경성의 육군사령부에 제출했다.
이 포로에 따르면,
그 제안은 육군사령부에서 나왔고, 그 포로처럼
조선에 거주하는 수많은 일본인 사업가들에게 전해졌다 (...)

조선의 일본군사령부는 일본군 내의 모든 군사령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편지는 수송, 식량, 의료 처치 등 그가 필요로 할지 모르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도록 군사령부들에 요청하는 것이었다. ”

... 이 전쟁포로와 그의 처는 음식점 영업을 처제에게 맡기고,
22명의 여성과 함께 1942년 7월 10일에 모두 조선인인 703명의 여성,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인격이 저열한 90명 정도의
일본인 남녀와 일행이 되어 부산을 출항했다 (...)

”

미국 전시정보국 (OWI),
심문회보 제2호 (1944)

“ 1942년 5월 초 일본인 모집업자들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새로 점령한 지역의 “위안 서비스”(“Comfort Service”)를 할 조선의 어린 여성들을 모집할 목적으로 조선에 도착했다. 이 “서비스”의 본질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병원의 부상병들을 방문하고 봉대를 감아주며, 대체로 병사 들을 위로해주는 일로 짐작되었다.

모집업자들은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가족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업무가 쉽고, 싱가포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여성들을 유인했다.

이런 거짓된 광고를 통해 많은 어린 여성들이 해외 업무를 위해 모집되었고 몇백 엔의 선금을 받았다. (...)”

”

미 전시정보국 (OWI) 일본군 전쟁포로
심문보고서 49호 (1944. 10. 1) (일부)

이 문서에서 밝혀진 사실들

- 1942년 5월 초에 업자들이 동원을 시작했다.
버마 북부에서 연합국의 패배가 확실시되던 시점
- 일본군은 이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위안소’ 설치 계획을 세우고 여성 모집에 돌입했다.**

이 문서에서 밝혀진 사실들

- 업자들은 가족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여성들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 일본군 당국이 여성 동원 과정에 깊이 개입
- 동일 문서에 업자들이 여성 7-800명을 모아 부산에서 배를 타고 1942년 8월 20일 버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기록

일본 당국 간의 협조를 통해 전쟁터로 이송되었던 '위안부' 여성들

일본 당국의 개입 사실

- **일본군과 내무성, 외무성 등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여성 모집과 민간인인 '위안부' 여성들의 이송을 관리
- 필요에 따라 여성들의 운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짐
- '당국은 합법적이고 인도적으로 제도를 관리했다'는
역사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 없음

다음 차시에서는

- 피해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증언을 통해
살펴보는 '위안부'문제의 의미

SOURCES

[출처01] 《매일신보》 1944.10.27

[출처02] 《경성일보》 1944.7.26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